

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「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」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추가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1년 2월 15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기 관 명 : 한국에스지에스 (주)

대 표 자 : 권 이 성

법 인 등 록 번 호 : 110111-0245757

사 업 자 등 록 번 호 : 106-81-59002

법 인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-38 청룡빌딩 12층

사 업 장 소 재 지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02-2 외 1필지 (울산사무소)

유효 기 간 : 2009년 8 월 21일 ~ 2013년 8 월 20일

추가 인정분야 및 범위 : 02.화학시험 2.013.석유제품

부 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